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 3.

미 래 창 조 과 학 부

1. 개정이유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관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3517호)」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규정과 동일한 중복 조항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10조)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분쟁조정 절차 조항을 직접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4조제4항 중 “과장이 된다”를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를 “분쟁조정에”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	<삭 제>
1.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험 관계 기관·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 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	

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5. 그 밖에 보험 관련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중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 ---------- ---------- ---------- ----------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분쟁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삭 제>

그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또는 자문을 하거나 진단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제6조(분쟁조정 절차)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	<삭 제>	

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제10조(운영규정 등) ①---------- 분쟁조정에 ----------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장이 정한다. <신 설>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